

—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7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23일

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
(2003. 7. 16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율과 대부료 연체요율을 인하하고
-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청사 등의 설계시 행정수요·기구·인력 등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을 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대부료·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(안 제23조)
 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(10년 이내) : 5% ⇒ 4%
 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(5년 이내) : 8% ⇒ 6%

-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농경지의 영리목적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(안 제26조)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선 설정(안 제31조)
 - 연체이자율
 - 1월 미만 : 연 12%
 - 1월이상 3월 미만 : 연 13%
 - 3월이상 6월 미만 : 연 14%
 - 6월 이상 : 연 15%
 - 연체료 부과기간 : 납기일로부터 60월
- 청사 등의 설계시 행정수요·기구·인력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정함(안 제48조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(대통령령 제17788호, 2002. 11. 29)
-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(행정자치부, 2003, 1. 8)
-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(경상북도지사, 2002, 8. 23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행정자치부 준칙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, 사용료 등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청사 등의 설계시 행정수요·기구·인력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표준면적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